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876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876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18 선고 2018가소13488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20. 3. 24

판결선 고 2020. 4. 7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18. 선고 2018가소1348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5. 2. 1.부터 2018. 2. 1.까지 시흥시 D, 1층 E호 사무실을 임차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와 동업으로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중개수수료를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 명의의 농협은행G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7. 12. 5. 시흥시 H 상가건물 I호, J호, K호, L호, M호에 관한 매매대금 565,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고 2017. 12. 7. 매도인 N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5,000,000원을 피고 C 명의의 수협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또한 피고 B는 2018. 1. 6.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O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8. 1. 5. 시흥시 P, Q호부동산에 관한 매매 대금 40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고, 원고가 매도인 R, 매수인 S, T로부터 중개수수료 5,1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동업은 2018. 1.경 종료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 B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피고 B는 2019. 10. 8. 수원지방법 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수원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9. 1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을 제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동업수익 분배에 관하여 영업이익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대하여 2분의 1씩 분배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으므로, 제1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17,500,000원(= 매도인 수수료 15,000,000원 + 매수인 수수료 2,500,000원)과 제2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 5,100,000원을 합한 22,600,000원의 50%인 11,3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5,100,000원밖에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6,200,000원(= 11,300,000원 - 5,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동업의 수익분배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반비용을 공제한 후 2분의 1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같은약정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1매매계약,제2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에서 이 사건 동업에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후 2분의 1씩 분배해야 하는데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이 이 사건 동업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 C은피고 B과의 관계로 인하여 계좌를 대여한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C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판사 안희경판사 김봉남